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18
----------	-------

발의연월일 : 2026. 3. 12.

발 의 자 : 권향엽 · 오세희 · 남인순
이주희 · 진성준 · 강준현
김종민 · 최민희 · 정일영
임미애 · 이재관 · 고민정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에서도 제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의 부담 등으로 인해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 및 제12조의10 신설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를 “대상·지원 수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직권 신청의 요건 및 동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해당 소상공인의 동의를 받아 그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상공인의 동의는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21288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0(보험료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다른 직권 신청의 실시 등을 위하여 소득자료·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용목적 등을 적은 문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관리 절차 및 보안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신 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10(보험료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직권 신청의 실시 등을 위하여 소득자료·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용목적 등을 적은 문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신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 관리 절차 및 보안 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벌칙)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② (현행과 같음)